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정재동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천구민이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천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안 제1조,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관내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금천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용료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 내용

- 금천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시설 사용 신청에 있어 금천구민이 우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안 제1조, 제2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가 구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구정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